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[별지 제3호서식] <신설 2018. 12. 13.>

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45일

신 청 인	기관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
신청내역	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일 년 월 일	지정번호
	유효기간 연장기간	
	유효기간 연장사유	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4조제5항 및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ㅇ ㅇ ㅇ 장 귀하

붙임 서류	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청 인	처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신 청	접수 및 검토
	▼
	심 사
	▼
	연장여부 판정
	▼
지정서 발급 ◀	검사기관 지정서 작성
	▼
	공 고

210㎜×297㎜[백상지 또는 중질지(80g/㎡)]